

재단법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

검 토 보 고

기 회 경 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재단법인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 및 운영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97. 5. 16

나. 회부일자 : '97. 5. 16

3. 제안이유

- 지방화·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지방중소기업의 경영개선과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 중소기업이 필요한 기술·정보·자금·판로 등을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업활동의 중추적 시설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 동 센터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코자 함.

4. 주요골자

가. 법인격 및 명칭을 규정함 (안 제2조)

- 법인격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
- 명 칭 : 「재단법인 충청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나.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사업을 규정함(안제7조)

- 각종산업·금융·경영·산업기술·인력정보 등의 제공
- 신기술 개발지원 및 종합기술지원
- 공동 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
-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 창업 정보제공과 창업 보육사업
- 중소기업 지원기관 지방조직의 집단화를 통한 편의제공사업
- 기술·경영연수사업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 기타 지원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다.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제9조)

라. 중소기업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로부터 수탁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제10조)

마.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경영상황에 관하여 보고 및 검사를 하도록 규정함 (안제12조)

바.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할수 있도록 규정함 (안제13조)

5. 검토의견

재단법인 충청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세계화·개방화·국경없는 무역전쟁시대에 지방 중소기업의 경영개선과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정보·자금·판로 등을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① 본 지원센터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② 지원센터의 사업으로는 (안제7조)

- 각종산업·금융·경영·산업기술·인력정보 등의 제공
- 신기술 개발지원 및 종합기술지도
- 공동 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
-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 창업정보제공과 창업 보육사업
- 중소기업지원기관 지방조직의 집단화를 통한 편의제공사업
- 기술경영 연수사업
- 통상산업부장관, 중소기업청장, 충청북도지사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 기타 지원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하였고

- ③ 지원센터는 제7조의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행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8조)
- ④ 충청북도지사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지원센터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 · 건물 ·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9조)
- ⑤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경영상황에 관하여 보고 및 검사 등 업무감독을 할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12조)
- ⑥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할수 있도록 하였음. (안제13조)

이와같이 체계적이고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기업활동을 최대한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개선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종합 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변여건 등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